

박정희 선임연구원

요약

일본은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사회보장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'고령자고용안정법'을 시행함. 이번 개정안으로 고령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은퇴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"70세 현역시대"가 시작되었음. 고용연장 및 기대수명 증가로, 고령층은 자산고갈 방지를 위한 노후자산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- 일본은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사회보장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70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「고령자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, '고령자고용안정법'이라 함)¹⁾ 개정안을 시행함
 - 이번 개정안²⁾의 주요내용은 "70세까지 계속 고용", "고령근로자가 희망 시 70세까지 지속적으로 업무위탁 체결", "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" 등이며, "고령자 취업보장 조치"를 강구하는 사업주의 "노력의무"가 추가되었음
 -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%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출산율도 2020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동반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음
 - 2021년 6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"인구통계"에 따르면, 2020년 출생아는 전년 대비 2.9% 감소한 84만 832명으로 1999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,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비중은 1993년 69.8% 최고점에서 2020년 59.5%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
 -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확대되고 공적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부분임
 -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18년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사회보장비가 121조 엔으로 GDP 대비 21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고령인구가 4천만 명이 되는 2040년에는 사회보장비가 약 190조 엔으로 GDP 대비 24%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함
-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고령자는 희망 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은퇴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"70세 현역시대"가 시작되었음

1)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재취업을 촉진, 정년퇴직자 등 고령 퇴직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
 2) 후생노동성(2021. 4. 1), "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: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"

- “70세까지 고용연장 및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평가” 조사결과³⁾, 이번 개정안을 “긍정적으로 평가한다”라는 응답이 53.9%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,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비율이 높음
-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55~64세 층을 대상으로 “70세에도 일을 할 것인지”를 묻는 질문에는 “70세 이후(27.2%) 또는 70세까지(23.3%) 일하겠다”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나 이 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
 - 이들 중 일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연령은 72.8세였으며, 75세 이상(42.6%),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(22.1%)의 응답비율이 64.7%로 70세를 지나도 오랫동안 일하기를 원하고 있음
- 고령층의 정년연장에 있어 개인차는 있지만,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고령층의 근무환경을 정비하고 겸업·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층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은퇴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됨

○ 고용연장 및 기대수명 증가로, 노후자산을 생존기간 동안 어떻게 운용하고 인출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해지고 있으며, 고령층은 자산고갈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자산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⁴⁾

- 고령층은 저위험·저수익의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거나, 노후자산 운용에 있어 가격변동리스크가 작다고 자산의 고갈위험이 낮아지는 것만은 아니며, 장수로 인해 노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기투자에 의한 수익의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
- 고령층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크게 가격변동리스크와 중장기 수익률하락리스크로 나누고, 각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인출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가격변동리스크에 대한 대처법으로는 자금계획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하는 방식으로, 은퇴시점에 자산의 일정비율은 투신상품에, 일부는 현·예금으로 보유하면서 매년 인출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함
 - 중장기 수익률하락리스크 대처법으로는 매년 상황별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에 위험발생을 대비하는 대처법(사전준비형) 또는 리스크가 표면화 되었을 때 대처법(유연성확보형) 등을 생각할 수 있음
- 이외에도 고령층은 본인의 인지판단 기능 저하 등에 따라 전략을 실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필요도 있음
- 한편 이번 고용연장 조치로 현재 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취업을 희망할 경우, 지급연금이 줄어드는 재직노령연금 등은 구조상 고령자의 일할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재논의가 필요함⁵⁾

3) 노무라종합연구소 산하 NRI사회정보시스템은 전국의 55~79세 남녀 2,500명을 대상으로 “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”에 대한 인식 및 찬반 등을 설문조사함(<https://www.nri.com>)

4) NLI Research Institute(2021. 7. 7), “老後資金の取り崩し”

5) 현재 운영 중인 재직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연금과 임금 등을 포함한 월수입이 47만 엔(60~64세 28만 엔)이 넘어갈 경우, 연금액 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며, 2020년 연금제도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부터는 60~64세 지급정지 기준액을 47만 엔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고령자 고용촉진에 제약이 되고 있음